##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3526 제출연월일: 2024. 9. 2.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55조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 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합리화(안 제6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76조의18제1항·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 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 다.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관련 규정 적용 방식 합리화 (안 제76조의22)
  - 1)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2) 연결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라.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안 제93조의3 제3항 신설, 안 제93조의3제4항·제5항)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외

투자기구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안 제112조의2제4항 신설)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바.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120조의4제2항 및 제124조제3호 신설)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참고사항

-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3518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35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투자신탁"을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으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를 "위반을 이유로"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마목1)부터 13)까지 외의 부분 중 "병원"을 "병원 등"으로 하고, 같은 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 1)부터 13)까지의 병원이 설립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 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립하고, 그 적립한 금액의 범위에서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을 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를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로 한다.

제51조의2제4항 본문 중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을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초과배당금액"을 "이월된 금액"으로 한다.

제51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 본문에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제4항 본문 및 제5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이월공제배당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를 "이월공제배당금액이"로, "초과배당금액부터"를 "이월공제배당금액이"로 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이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

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 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2조의2제1항에 제1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을 "해당 각 호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호 각 목"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당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법인의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제76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따라 계산한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한다.

제76조의18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 1호에 따른 방법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 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76조의2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연결집단이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1.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
  -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 2.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 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 을 적용
-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 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 구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 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 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의2 또는 제7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93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

는 경우에는 제9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제1 항 각 호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제93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외국법인"을 "외국법인(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를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 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적격외국금 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의4제5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는 "제93조의3제1항에 따라 비과세"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는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로,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은 "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98조제1항"으로 본다.

제98조의4제1항 전단 중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11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0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 함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92조제2항, 제93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가목·다목·라목, 같은 조 제10호카목·타목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을 "제92조제2항, 제93조제10호카목·타목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다목·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11조제1항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13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98조의4제1항 전단, 제120조의4제2항 및 제124조제3호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 2.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

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 제3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제2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 제5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 제6조(중간예납세액 및 연결중간예납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3 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6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7조(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 등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8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93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

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9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0조(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경과 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 소득에 관하여는 제98조의4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하여는 제12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제12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신탁소득) ① (생 략)	제5조(신탁소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②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u>투자</u>	<u>투</u> 자
<u>신탁</u> 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	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
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	<u>이 발행된 신탁</u>
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	
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	
국법인으로 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
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	임)
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u>위반에</u> <u>대한 제재(制裁)로서</u> 부과되 는 공과금
- 6. (생략)
-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제 (생 략)
  -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 라. (생략)
    - 마. 다음의 <u>병원</u>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 출하는 기부금
      - 1) ~ 13) (생 략)

<신 설>

5	- —
<u>위반</u>	<u>을</u>
<u>이유로</u>	
6. (현행과 같음)	
]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1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병원 등</u>	-
	-
1) ~ 13) (현행과 같음)	
14) 1)부터 13)까지의 병원	원
이 설립한 「보건의료	
<u> </u>	
	1_

바. (생 략)

2. (생략)

③ ~ ⑥ (생 략)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 |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 산입)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 다)가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회 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 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60조제2항제2 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 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 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③ (생 략)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 한 과세) ①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 단

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산입)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 다)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 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립하고, 그 적립한 금액의 범위에서 제60 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 계산서에 계상을 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금액을 결산을 확정 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 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한 과세) ① (현행과 같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답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수 있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수 있다.

- 1. (생략)
-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 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 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 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 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 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 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 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 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9
2
2
2
2
2
2
2
2
2
2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u>비율</u>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 4. (생략)

③ • ④ (생 략)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u>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u> -
3.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u>소득금액에</u>
서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
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
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하는 경우에는 그 <u>초과배당금액</u> 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1.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 <u>이월된 금액</u>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이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 의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해 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 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 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 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 제하지 아니한다.

⑥제4항 본문 및 제5항 본문에따라 이월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이라 한다)-----

-----.

1. 이월공제배당금액-----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 저 공제할 것

2.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ㅣ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 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 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 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 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 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2. 이월공제배당금액이 -----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 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 례제한법 100조의32에 따 른 투자 •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 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 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 는 금액의 100분의 19)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1 1132 6	, _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3천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 는 금액의 100분의 24)

### ② (생략)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 정법률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하이 조에서 같다)이 제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 정법률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 설>

- 2. · 3. (생략)
- ② ~ ⑨ (생 략)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저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 여 계산한다. <단서 신설>

- 1. 2. (생략)
- ② <u>제1항</u>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
3호에 따른 주식등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2.・3.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1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u>다만, 직전 사업연도</u>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
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
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
<u>해당 각 호의 구분</u>

- 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 1.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 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 른 방법

가. ~ 다. (생 략)

<신 설>

## ③ ~ ⑤ (생 략)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① 연결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자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 목
2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
인이 합병 당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해당 합병법인의 합
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u>경우</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①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중간 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중간예 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1. · 2.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 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 간의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 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_\_\_\_\_

\_\_\_\_\_

\_\_\_\_\_

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 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1. 2.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연결중간예납세액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③ ~ ⑤ (생 략)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 |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 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 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세액을 계산할 때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 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 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 른 방법

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법 인세로서 확정된 연결산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 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 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 지 아니한 경우

③ ~ ⑤ (현행과 같음)

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연결집단이 이 법 및 「조세특 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 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 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 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 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 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 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1.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규정을 적용
  -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 결법인: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 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중견기업에 관한규정을 적용
- 2.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 정법률

-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 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제2호의2 또는 제7호의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나. (생 략)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 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 의 소득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

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u>다.</u>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
정법률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1
<u>제7호</u>
<u>.</u>
· 가.·나. (현행과 같음)
2
<i></i>
<u>&lt;삭 제&gt;</u>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

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 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나. (생 략)

다. 「소득세법」 제87조의6 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 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 한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소득세법」 제87조의6 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 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마. (생략)

3. ~ 10. (생 략)

자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② (생략)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 받으려는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 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나. (현행과 같음) <u><</u>삭 제>

<삭 제>

마. (현행과 같음) 3. ~ 10. (현행과 같음)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 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93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 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 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 **4** ----

----- 외국법인(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 을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직접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 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公募) 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 2.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국외투자기구

<신 설>

<u> 구들 포함한다. 이하 이 소에서</u>
<u> 같다)</u>
⑤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u>.</u>
<u>&lt;삭 제&gt;</u>

<u><</u>삭 제>

⑥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외국법인 또는 적격 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 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법 <신 설>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 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 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 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

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기 한 및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는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 우 제98조의4제5항 본문 중 "제 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는 "제93조의3제1항에 따라 비 과세"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는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로,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 자가 제3항"은 "외국법인, 적격 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98 조제1항"으로 본다.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 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사업소득-----

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 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 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 • 면제 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 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 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 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 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 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 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 ② ~ ⑦ (생 략)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 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
② ~ ⑦ (현행과 같음)
∥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
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
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 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야 한다.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의 제출)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세무서장, 지방국세청 장 또는 국세청장-----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 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 태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1.·2. (생략) <신설>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 정법률(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시행하고, 제92조제2항, 제93조제1호, 같은 조 제2호가목・다목・라목, 같은 조 제10호카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u>수 있다.</u>	
제	]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
	태료)	
	<u>.</u>	
	1.・2. (현행과 같음)	
	3.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가
	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 정법률(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92조제2항, 제93
조제10호카드	구・타목 및 제98조
의 개정규정	은 2027년 1월 1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타목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부터 시행하며, 제9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ㆍ다목ㆍ라 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 정법률(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 정법률(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에 관한 적용례) ① 제92조제2 항제1호나목 및 제93조제10호 카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 | 1일 ------여 •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생 략)

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에 관한 적용례) ① ---------- 2027년 1월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 정법률(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 정법률(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1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1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13항·제16항 ·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에	대한	원천	<sup>]</sup> 징수의	특	례에	관
한	적용	례) -				
					2027	<u>7년</u>
<u>1월</u>	1일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의 결과

O 수입 +16,366억원

(단위: 억원)

	연 도	T				I	( ''	<u> ゴ・ゴゼ)</u>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1 2			~11	-)	۸۱	0		
	0		해	당	없	음		
지출	0							
	소 계(A)							
	공시대상기업 중간예 납 계산방법 합리화	+14,000	-	-	-	-	+14,000	+2,800
	성실신고확인대상 소							
	규모 법인에 대한 법	+50	+579	+579	+579	+579	+2,366	+473.2
	인세 과표구간·세율						·	
	조정							
	손금불산입 대상 부		추	정	곤	란		
	담금 범위 조정		十 一	′ઇ'	亡	넌		
	의료기술협력단을 기							
	부금 손금산입 대상		추	정	콘	란		
	에 포함							
수입	자기주식 관련 적격		추	정	곤	란		
	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추	정	곤	란		
	기간 확대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							
	중견기업 규정 적용		추	정	콘	란		
	방법 합리화							
	가상자산 관련 과세		추	정	콘	란		
	자료 제출 의무 강화							
	소 계(B)	+14,050	+579	+579	+579	+579	+16,366	+3,273.2

총 비용(A-B)	△14,050	△579	△579	△579	△579	△16,366	△3,273.2
-----------	---------	------	------	------	------	---------	----------

- 위 표에 따라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증감액을 재정수반요인별로 구분하여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단위: 백만원 또는 억원 중 선택하여 기재)
- 추계기간: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재정수반요인별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않고 각각 기재

##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제63조의2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업종별 매출액 등을
1	중간예납세액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 계산), 제76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
	조의18	록 함
	(연결중간예납)	
2	제55조(세율)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을 9%에
	^  00a_(^   <u>a</u> )	서 19%로 조정함
	제21조(세금과	비러가 하면보시웹스크 이의 보기라는 코피크는 스크바기이 레기제
3	공과금의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부과되는 공과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에
	손금불산입)	포함하도록 명확화함
	제24조	
	(a) H 7 A	의료기술협력단에 기부하는 경우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4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기부금 대상으로 추가
	손금불산입)	
	제46조제2항	
	(분할 시	
5	분할법인등에	적격분할 주식배정 요건 위임근거 마련
	대한 과세)	
6	제76조의22	연결납세방식 최초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기간을 5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나 스 그 첫 대
	관련 규정의	년으로 확대
	적용)	
	제76조의22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연결법
	(연결법인에	인도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연결집단이 중
7	대한 중소기업	건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법인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면 중
	관련 규정의	
	적용)	견기업 관련 규정 적용
	제120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24조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에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8	(	신고 직권말소 및 신고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사업자를 포함
	명령사항위반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
	에 대한	
	과태료)	

- O 재정수반요인이 있는 조·항 등에 대하여 각 조·항 등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조·항 등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 별도 항목별로 분류)
- O 재정수반요인이 있으면 추계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열거
- ※ 재정수반요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제63조의2		. (, , , = , , , , ,
1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여	
	제76조의18	1	
	(연결중간예납)		
2	제55조(세율)	여	
	제21조(세금과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
3	,	부	손금불산입 대상 부담금 범위 조정에 따른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의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
	제24조(기부금의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
4	· 손금불산입)	부	의료기술협력단을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에 따른 추가 손금산입의 규모 추정하기 곤란
_	제46조제2항(분할 시	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
5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규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정을 받을 분할건수 및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
6	대한 중소기업 관련	부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
0		7	
	규정의 적용) 제76조의22		간 확대됨에 따른 세수 규모 추정하기 곤란
	(연결법인에 대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
7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부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에 따른 세수 규모 추정하기 곤란
	적용)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
8	제124조	부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에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따른 세수 규모 추정하기 곤란
	과태료)		

- 각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실시여부 및 추계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등 기재
- 추계 미실시 사유: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기존 실시 중인 사업의 명문화(기존사업명을 함께 기재)' 등 추계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를 기재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O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24.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하에 작성

#### <작성방법>

- O 비용추계 전반에 대한 전제사항 등을 기재
- 가격기준, 비용추계 기간, 의안의 시행시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

####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① 공시대상기업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간예납 계산방법 변경 전후의 납부세액 차이
- ②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 · 세율 조정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과세표준에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여 추정

#### <작성방법>

- O 의안의 심의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Ⅱ. 재정수반요인」에 기재된 각 재 정수반요인별로 상세한 추계내역을 기재
- O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재정수반요인별로 추계에 활용된 통계자료 와 그 출처, 추계의 근거, 추계의 전제·가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O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비용이 있으면 별도로 추계 가능
- 하나의 특정된 값으로 추계하기 어려울 경우 일정범위로 기재 가능

## Ⅳ.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 O 비용추계서를 활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포함) 등을 기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재

# V. 작성자

##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 국장
남지형	이금석	정형	정정훈

###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지형	044-215-4226	njh90@korea.kr	

<sup>\*</sup>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O 해당없음(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XX	20XX	20XX	20XX	20XX	합 계
○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 회계·기금 간 전입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기타						
〈합 계〉						

# Ⅱ.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circ$	해당없음(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	---------	-----	-------	-----	-----	-----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XX	20XX	20XX	20XX	20XX	합 계
□ 중앙정부						
ㅇ 일반회계						
ㅇ ○○특별회계						
○ ○○기금			_			
□ 지방자치단체						
ㅇ 일반회계						
ㅇ ○○특별회계						
ㅇ ○○기금						
□ 기타						
Ò						
〈합 계〉						

#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25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효율화, 과세기반 확대 노력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

# Ⅳ. 부대의견

O 해당없음

# V.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음	
		(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 Ⅵ. 작성자

##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남지형	이금석	정형	정정훈

###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지형	044-215-4226	njh90@korea.kr	